

피델리티펀드(FIDELITY FUNDS)

2012년 11월 19일자
정관

제1조 법인유형 및 법인명

“피델리티펀드”(FIDELITY FUNDS, 약칭으로 FIL Funds, 이하 “회사”)(Fidelity Funds와 FIL Funds는 서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음)라는 명칭하에 주식청약인 인수인 및 신주를 취득한 주주로 구성되는 변동자본투자회사의 자격을 가진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제2조 존속기간

회사의 존속기간은 무한하며, 회사는 본 정관의 제2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 정관(이하 “본 정관”)의 개정에 필요한 방법으로 주주의 결의에 의해서 해산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회사의 유일한 목적은 투자위험을 분산시키고 주주에게 자산의 운용 수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 가능한 자금을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2010년 12월 17일자의 법률(개정본 포함)(이하 “2010년 법”)의 제1부에 의거 허용하는 양도성 증권 및 다른 투자자산(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주식이나 수익권 포함)에 투자하는 것이다.

회사는 2010년 법에 의거 허용되는 최대 한도 내에서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절차를 취하고 행동을 이행할 수 있다

제4조 등록사무소

회사의 등록사무소는 룩셈부르크 대공국의 룩셈부르크시에 둔다. 룩셈부르크 법규에 의거 허용되는 경우, 회사의 이사들(이하 “이사(들)”)은 회사의 등록사무소를 룩셈부르크 대공국의 기타 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 이사회는 결의에 의하여 룩셈부르크 대공국 국내 및 해외(단 미국 및 그 영토 또는 속령은 제외)에 지점 및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회사의 등록 사무소에서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비정상적인 정치, 경제 또는 사회적인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임박하다고 이사회가 결정한 경우 그 등록사무소는 일시적으로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 비록 회사의 등록사무소의 일시적인 이전이긴 하지만 그러한 일시적인 조치는 여전히 룩셈부르크 법인으로 남아 있는 회사의 국적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자본금

회사의 자본금은 무액면 주식으로 구성되며 본 정관의 제22조에 따라 결정되는 바에 따라 언제나 회사의 순자산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1,250,000 유로화 상당의 미화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유보하지 않고 본 정관의 제23조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 또는 본 정관의 제22조에 따라 결정되는 해당 클래스의 1주당 순자산가치에 기초한 가격으로 전액납입주식을 어떠한 제한없이 발행하도록 수권되었다.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한 주식은 2010년 법 제181조의 의미 내에서의 서로 다른 하위펀드(이하 “하위펀드(들)”)로 발행 될 수 있으며 각 하위펀드의 발행대금은 본 정관의 제3조에 따라 양도성 증권 또는 이사회가 각 하위펀드와 관련하여 수시로 결정하는 지역, 산업 또는 화폐 또는 특정한 유형의 주식(equity) 또는 채권증권에 상응하는 그 밖의 허용 자산에 투자한다. 이사회는 또한 각 하위펀드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주식 클래스(이하 “주식 클래스(들)”)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자산은 통상적으로 관련 하위펀드의 투자방침에 따라 투자되지만 개별적인 보수 및 수수료 구조, 배당 방침, 헷징 방침 또는 기타 특징들이 각 주식 클래스마다 부과될 수 있다.

본 정관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이상 “하위펀드”는 “주식 클래스”를 의미한다. 회사 자본금의 결정을 위하여 각 하위펀드에 기하는 순자산은 미화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미화로 환산하며 자본금은 모든 하위펀드의 순자산의 총계가 된다.

신주발행을 위하여 이사회는 회사의 합법적으로 수권된 이사나 임원 또는 그 밖의 합법적으로 수권된 자에게 그러한 주식의 청약인수, 대금의 수령 및 교부의 의무를 위임할 수 있다.

주식에 대한 지급은 주식의 청약가격이 결정된 평가일(이하 제22조에서 정의됨)에 이루어지며 또는 이사회가 특정한 경우에 또는 일반적으로 수시로 결정하는 날(1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됨)까지 이루어진다.

(이하 번역 생략)

제6조 주권

어떠한 주주가 자신의 주권이 분실, 도난 또는 멸실된 사실을 회사가 만족하는 정도로 충분히 입증하는 경우 그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이사회가 단독 재량으로 그와 같이 정하는 경우 적용법률에 의하여 하여되거나 회사가 이에 따라 결정하는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고 보험회사가 교부한 채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 보증을 받으면 부분의 주권이 발행될 수 있다.

부분의 신주권이 발행되면 신주권으로 대체된 원주권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멸실된 주권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신주권으로 교환될 수 있다. 멸실된 주권은 회사에 인도되며 인도 즉시 폐기된다. 회사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분의 신주권 또는 신주권의 비용 및 이의 발행 및 등록, 또는 구주권의 폐기와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한 합리적인 제반비용을 주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소유 제한

회사는 이하와 같은 경우 그 주식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어느 자, 회사 또는 법인체(본 정관 제8조에서 정의된 미국인 또는 지분율 3% 소유자 포함)의 주식 소유가 회사, 당해 주식 또는 이의 여하한 클래스의 대부분 주주들에게 해가 된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 룩셈부르크 국내외의 법 또는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또는
- 주식 소유로 인하여 회사나 회사 주주들이 규제, 조세 또는 재정상의 불리한 영향(특히 해외계좌신고제도(FATCA)에 의거 부과되는 요건에 따른 또는 그에 대한 위반에 따른 조세채무 포함)을 받게 되거나 특히 룩셈부르크 대공국 법을 제외한 조세법의 적용(또는 다른 경우였다면 적용 받지 않았을 기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은 자, 회사 또는 법인체(해외계좌신고제도(FATCA) 요건의 적용을 받거나 이를 위반한 미국인 및/또는 자연인 및 지분율 3% 소유자 포함)를 본 정관에서 이하 “주식 소유 금지인(들)”이라 한다.

이러한 목적상 회사는 이하를 할 수 있다.

- 가. 주식 소유 금지인의 주식에 대한 법적인 또는 수익상의 소유로 되는 등록이나 양도 또는 그러한 등록이나 양도 이후 주식 소유 금지인이 소유하게 되는 주식의 발행 및 주식양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 나. 언제든지 주주명부에 등록된 자 또는 주주명부에 주식의 양도를 등록하려는 자에게 그러한 주주의 주식에 대한 수익상의 소유가 주식 소유 금지인에게 있는지의 여부 또는 그러한 등록이 주식 소유 금지인의 수익상의 소유로 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여하한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 다.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식 소유 금지인의 표결 및 주식 소유 금지인이 지분율 3% 소유자인 경우 그의 3% 이상의 표결을 거부할 수 있다.
- 라. 주식 소유 금지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함께 주식 또는 미상환 주식의 특정부분에 대한 수익상의 소유자라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하기의 방법으로 주주로부터 보유 주식 전부 또는 주주가 보유한 특정부분을 초과하는 주식을 강제 환매 또는 환매케 할 수 있으며 또한 주식 소유 금지인이 지분율 3% 소유자인 경우 회사는 주주로부터 회사의 미상환 주식의 3%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강제 환매 또는 환매케 할 수 있다.

- (1) 회사는 그러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주명부에 주식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게 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및 매수자 명의 등 매수할 주식에 대하여 상술한 매수통지(“매수통지”)를 송달한다. 그러한 통지는 모두 선납등기우편으로 회사에 가장 최근에 알려진 주주의 주소지 또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그러한 주주에게 송달된다.

통지를 송달받은 즉시 상기한 주주는 매수통지에 명시된 주식이 표창하는 주권을 회사에 교부할 의무를 가진다. 매수통지에 명시된 영업일이 끝나는 즉시 주주는 더 이상 매수통지에 명시된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며 기명주식의 경우 그러한 주주의 명의를 주주명부에서 삭제되며 무기명주식의 경우 그러한 주식이 표창하는 주권은 폐기된다.

- (2) 그러한 주식을 매수하는 가격(“매수가격”)은 본 정관 제21조에 따라 산정되어 이사회가 매입통지에 명시한 평가일의 해당 클래스의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에 기초한 금액에서 본 정관에 규정된 송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된다.

- (3) 매수가는 이사회가 해당 하위펀드의 주식의 환매가의 지급을 위하여 정한 통화로 그러한 주식의 구소유주가 사용 가능하도록 지급되며 그러한 통지에 명시된 주권 및 이에 첨부된 만기되지 아니한 배당쿠폰의 양도 이후의 매수가격의 최종결정 즉시 그러한 주주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룩셈부르크 또는 (통지에 명시된) 그 밖의 다른 장소의 은행에 회사가 예치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매수통지가 송달되는 즉시 구주주는 더 이상 그러한 주식에 대하여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상기한 주권의 양도 이후 은행으로부터 매수가(이자는 없음)를 수령할 권리를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자산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갖지 아니한다.

본 항에 따라 주주가 수령할 자금 (그러나 매수통지에 명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징수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그 이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그 권리는 회사에 귀속된다. 이사회는 수시로 그러한 귀속을 완료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회사를 대신하여 그러한 행위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 (4) 본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회사에 의한 권한의 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소유권의 불충분한 증거를 이유로 또는 매수통지일에 어떠한 주식의 진정한 소유권이 회사에 다르게 여겨진 것을 이유로 하여 이의가 제기되거나 무효화되지 아니한다. 단, 회사는 상기한 권한을 선의로 행사한다.

(이하 번역 종략)

제8조 미국인 및 지분을 3% 소유자

본 정관에서 사용된 “미국인”이라는 용어는 회사의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이사회는 수시로 이러한 의미를 변경 또는 명확화 할 수 있다.

본 정관에서 “지분율 3% 소유자”는 법률상 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회사의 당시 미상환 주식수의 3%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상사 또는 법인체를 의미한다.

본 정관에서 사용되는 지분율 3% 소유자는 인수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회사의 조직과 관련하여 발행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인수인과 회사에 의한 주식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를 판매 대행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딜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 주주총회

회사의 적법하게 개최된 주주총회는 회사의 주주전체를 대표하며 이의 의결사항은 그 보유 주식의 하위펀드와 상관없이 모든 주주를 구속하며, 주주총회는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행위를 지시, 수행 및 인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제10조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는 룩셈부르크 법률에 따라 룩셈부르크에 있는 회사의 등록사무소 또는 총회통지에 명시된 룩셈부르크내의 다른 장소에서 매년 10월 첫 번째 목요일 정오에 개최된다.

상기한 날이 룩셈부르크에서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정기주주총회는 익영업일로 하며 이사회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경우 정기주주총회는 룩셈부르크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다.

룩셈부르크 법규에 기재된 조건에 의거 허용되는 경우 정기주주총회는 전술된 내용과 다른 일자, 시간 또는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일자, 시간 또는 장소는 이사회가 정하여 총회 통지에 명시한다.

주주들의 그 밖의 다른 회의 또는 하위펀드 회의는 회의의 각 통지에 명시된 장소와 시간에 개최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기주주총회 또는 각 주주총회는 미합중국, 그 영토 또는 속령에서 개최되어서는 아니된다. 하위펀드 회의는 해당 하위펀드에 배타적으로 관련된 사안들을 정하기 위하여 개최될 수 있다.

2개 이상의 하위펀드가 이들 주주들의 승인을 요구하는 제안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하위펀드들은 단일 펀드로 간주될 수 있다.

본 정관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룩셈부르크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족수 및 총회 연기는 회사의 주주총회 통지와 집행을 규율한다.

하위펀드를 막론하고 하위펀드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에 상관없이 각 주식은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의 대리인으로 다른 자(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일 필요는 없다)를 선임함으로써 행위할 수 있으며 그러한 대리인은 서면으로 또는 케이블, 전보, 텔렉스 또는 팩스로 또는 해당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전자 방식을 통하여 임명한다. 이와 같이 임명된 대리인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다시 소집된 주주총회에 대해서 무효처리 되지 않아야 한다.

본 정관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와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소집된 주주총회 또는 하위펀드 회의의 결의사항은 과반수 참석주주의 과반수 표결에 의하여 가결된다. 주주가 표결에 참석하지 않거나 기권하거나 백지 또는 무효 투표로 제출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표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조건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은 주주들이 완전히 이행하여야 하는 그 밖의 다른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총회 통지

주주총회는 의사일정에 명시되고 적용법률에 따라 송부 및/또는 발행되는 통지에 따라 이사회에 의하여 또는 회사의 자본금의 최소 1/10을 대표하는 주주들의 서면 요청시 소집될 수 있다.

의사일정은 이사회가 준비하나 주주총회가 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주주들의 서면요청서에 의하여 소집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러한 경우에 이사회는 보충의사일정을 준비한다.

주주총회에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회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경우 회의는 사전통지 또는 사전 공고없이 개최될 수 있다.

룩셈부르크 법규에 기재된 조건에 의거하여 해당 총회의 정족수 및 과반수는 총회 직전 일자 및 시점(이하 “기준일”)으로 기발행 주식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에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보유 주식에 부가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리는 기준일 현재 주주들의 보유 주식을 참고하여 결정됨을 정기주주총회 통지에 명시할 수 있다.

주주총회 또는 하위펀드 회의에서 처리된 업무는 의사일정에 포함된 사항(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 포함)과 이에 부수적인 업무에 국한된다. 의사일정에 이사 또는 감사인의 선임을 포함하는 경우 선임예정인 이사 또는 감사인의 명목이 의사일정에 기재되어야 한다.

제12조 이사회

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되며 이사는 반드시 주주일 필요는 없다. 이사회는 과반수는 조세상의 목적을 위하여 영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구성된다.

이사들은 주주들에 의하여 정기총회에서 선임되며 차기 주주총회로 종료하는 기간 동안 그들의 승계인이

선임될 때까지 재직한다. 이사회에 추천되지 않은 이사 후보자는 미상환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들의 표결에 의해서만 선임될 수 있다. 이사는 주주의 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 없이 해임 및 대체될 수 있다. 사망, 퇴임 또는 그 밖의 기타 사유로 재직중인 이사가 공석인 경우 나머지 이사들이 과반수 표결에 의하여 차기 주주총회까지 그러한 공석을 메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13조 의장 및 이사회 회의

이사회는 이사회 회의 회원 중에서 1인을 의장(이하 “의장”)으로 1인 또는 그 이상을 부의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의 보관에 책임을 지는 비서역을 1인 선정하며 이는 반드시 회사의 이사일 필요는 없다. 이사회는 회의통지에 기재된 장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미합중국, 그 영토 또는 속령 또는 영국이어서는 아니됨) 의장, 2인의 이사 또는 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수권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될 수 있다.

의장은 주주총회를 주재하며 의장이 부재 또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다른 이사가 임시로 의장직을 주재하며 이들이 부재 또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주들은 회사의 다른 이사, 임원 또는 이들이 과반수 표결에 의하여 임시의장으로 결정한 그 밖의 개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사회는 2010년 법 제27조의 의미 내에서의 감독임원, 부장 또는 부부장을 포함한 회사의 임원 또는 회사의 운영과 운용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밖의 다른 임원을 수시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은 반드시 회사의 이사 또는 주주일 필요는 없다. 본 정관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명된 임원은 이사회가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이사회 회의의 통지는 그러한 통지에 그 성격이 명시된 긴급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또는 유선, 전보, 텔렉스나 팩스로 또는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회의 개최시간 최소 24시간 전에 미리 모든 이사들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각 이사의 서면동의 또는 전보, 텔렉스, 팩스 또는 보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한 동의로 보류될 수 있다. 이사회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과거에 채택된 일정에 정하여진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된 개별적 회의에 대한 개별통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하 번역 중략)

제14조 의사록

이사회 회의 의사록은 의장, 그 부재시 회의를 주재한 임시의장 또는 2인의 이사에 의해 서명된다. 사법상의 절차상 또는 이와는 다르게 작성된 의사록의 사본 또는 초본은 의장, 회의의 임시의장, 2인의 이사 또는 1인의 이사와 비서역 또는 부비서역이 서명한다.

제15조 이사회 권한

이사회는 위험분산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 하위펀드에 관련된 회사 방침과 투자지침 및 회사의 운영 및 영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또한 이사회는 이하와 관련한 투자제한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2010년 법 제 1 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하위펀드의 자산 투자에 수시로 적용되는 투자제한 사항을 결정한 권한이 있다:

- (가) 각 하위펀드의 차입 및 그 자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그리고
- (나) 여하한 형태 또는 종류의 유가증권에 투자될 수 있는 자산의 최대 한도 및 각 하위펀드가 취득할 수 있는 여하한 형태 또는 종류의 유가증권의 최대 한도

이사회는 회사의 자산을 (i) 2010년 법에서 정한 정규시장에서의 상장이 허용되거나 동 정규시장에서 거래되는 양도성 유가증권/단기금융상품, (ii) 유럽연합 회원국(2010년 법에 정의된 바에 따름)의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일반인에게 인정되고 개방된 다른 정규시장에서 거래되는 양도성 유가증권/단기금융상품, (iii) 유럽, 아시아, 호주, 오세아니아, 미대륙 및 아프리카의 여타 국가의 증권거래소에서의 공식적인 상장이 허가되거나 상기한 국가의 다른 정규시장(단,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일반인에게 인정되고 개방된 시장일 것)에서 거래되는 양도성 유가증권/단기금융상품, (iv) 최근에 발행된 양도성 유가증권/단기금융상품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증권거래소나 기타 정규시장에 상장신청을 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었으며,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동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 보증되어 있는 증권 및 (v)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회가 규정하는 제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사의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그 밖의 증권, 증서 또는 그 밖의 다른 자산에 투자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유럽연합 회원국(2010년 법에 정의된 바에 따름), 이의 지방정부, 감독당국이 승인하고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유럽연합의 비회원국(OECD 국가, 인도, 싱가포르,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또는 유럽연합의 회원국 1국 이상이 가입한 국제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양도성 유가증권/단기금융상품에 각 하위펀드의 순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단, 회사가 관련 하위펀드를 대신하여 본 규정을 준용하려고 하는 경우 회사는 최소한 6개 이상 종목의 증권을 보유해야 하며 어느 한 종목의 증권이 하위펀드의 순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회사의 자산을 2010년 법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정규시장에서 거래되는 현금결제상품(equivalent cash settled instruments) 및/또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단, 기초 상품이 2010년 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상품, 투자설명서에 공시된 투자목적에 따라 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지수, 금리, 외국 환율이나 통화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사회는 특정 주가지수나 채권지수의 성과를 따르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자산을 투자할 2010년 법 관련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하나 이상의 하위펀드들을 설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회사는 관련 하위펀드에 대하여 투자설명서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이상 2010년 법 제41(1)e)항에서

정의한 UCITS 또는 다른 UCI의 수익권이나 주식에 하위펀드 순자산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룩셈부르크 법규에 명시된 조건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라도 관련 룩셈부르크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하위펀드와 관련한 투자설명서의 공시 내용에 따라 (i) 어느 하위펀드를 자UCITS 또는 모UCITS으로 설정하거나, (ii) 기존 하위펀드를 자UCITS 하위펀드로 전환하거나, 또는 (iii) 자UCITS 하위펀드의 모UCITS을 변경할 수 있다.

하위펀드는 룩셈부르크 법규에서 정한 조건에 의거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하나 이상의 하위펀드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예정인 주식을 매입, 취득 및/또는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관련 룩셈부르크 법규에 기재된 조건을 전제로 피투자펀드의 주식에 부가된 의결권(만약 있는 경우)은 해당 하위펀드가 피투자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그의 행사가 중지된다. 덧붙여 하위펀드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의 가치는 2010년 법에서 정한 최소 순자산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상 회사의 순자산 산정시 고려되지 아니한다.

각각의 투자 부문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투자 및 운용이 적합한 경우 이사회는 본 정관 제22-1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동운용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하위펀드들에 대하여 설정된 자산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 및 운용할 수 있다.

이사회가 수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0년 법 및 관련 룩셈부르크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투자는 자회사들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16조 이해상충

회사의 이사회 임원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다른 회사 또는 단체의 이사회 임원이 되는 경우 회사와 그 상대방 회사와의 계약 및 거래는 그 이해관계 사실에 의하여 무효가 되거나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번역 생략)

제17조 면책

아래에 기재된 예외사항과 제한사항에 따라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인 자 또는 이사회 임원이었던 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자신이 당사자로 연루된 청구, 소송 또는 절차와 관련하여 또는 이와는 달리 자신이 이사 또는 임원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으로 부담하였거나 지급한 채무와 제반비용 및 이의 해결을 위하여 자신이 부담 또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회사에 의하여 변제받는다. “청구”, “소송” 또는 “절차”는 현재 계류중인 모든 청구, 소송 또는 절차 (민사상, 형사상의 또는 그 밖의 항소포함)에 준용되며 “채무” 또는 “비용”은 법률자문료, 경비, 확정채무, 해결을 위하여 지급된 금전, 벌금, 과태료 및 그 밖의 다른 채무를 의미한다.

본 정관에는 임원 또는 이사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배상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가. 고의의 불법행위, 악의, 태만 또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의무의 무모한 해태로 인한 회사나 회사의 주주들에 진 채무
- 나. 그의 행위가 회사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으로 성실하게 행동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결정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 다. 해결시, 1) 해결을 승인하는 법원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의하여 2) 청구, 소송 또는 절차에 연루되지 아니한 이사의 최소 과반수로 구성된 회사의 이사회 2/3의 표결에 의하여 또는 3) 독립적인 자산운용회사의 서면 의견서에 의하여 이사 또는 임원이 고의의 불법행위, 악의, 태만 또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의무의 무모한 해태를 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본 정관에 규정된 면책권은 회사에 의하여 유지되는 방침에 의하여 보증될 수 있고 분리될 수 있으며 여하한 이사 또는 임원에게 현재 또는 장래에 부여되는 그 밖의 다른 권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위 면책권은 더 이상 이사 또는 임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지속적이며 그러한 자의 상속인, 집행인 또는 관재인의 이익이 된다. 본 정관의 어떠한 규정도 계약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따른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사 또는 임원을 제외한 회사의 전직원에게 부여되는 면책권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본 조에 그 성격이 명시된 청구, 소송 또는 절차의 항변을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이의 최종처분 이전에 이사 또는 임원이 본 조의 면책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경우 동 이사나 임원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자의 상환 약정을 수령하는 즉시 회사에 의하여 선납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 이사들이 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이사들에 대한 보수 지급을 허용할 수 있으며 동 금액은 이사회 재량에 따라 이사들 간에 분배된다.

나아가, 이사회 이사들은 합리적 한도 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지급한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다.

제18조 위임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 및 업무를 수행할 권한(회사의 수권 명의인으로 행위 할 권한 포함) 및 회사 방침 및 목적을 수립하기 위하여 행위 할 권한을 회사의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동 임원은 이사회 승인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또한 특정 업무를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위원회 (그러한 자가 이사회 이사인지 여부를 불문함)에 위임할 수 있다. 단, 회의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위원회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위원회도 그 권한이나 재량을 행사할 목적으로 개최될 수 없다. 나아가,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영국에 거주하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경우, 어떠한 권한도 위원회에 위임될 수 없다. 어떠한 위원회도 미합중국 또는 그 영지나 속지에서 혹은 영국에서 개최될 수 없으며, 회의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출석한 이사들의 과반수가 영국 거주인인 경우, 어떠한 회의도 유효하게 개최될 수 없다.

제19조 서명

회사는 2인 이상의 공동서명이나 회사의 적법하게 수권된 이사나 임원 또는 기타 이사회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한 사람의 개별 서명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20조 승인된 법정 감사인

회사의 업무 및 특히 장부를 포함한 회사 재정 상황은 훌륭함 및 전문 경험에 있어서 룩셈부르크 법률상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1인 이상의 승인된 법정 감사인(*réviseur d'entreprise agréé*)에 의하여 감독되며 동 감사인들은 2010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무를 수행한다. 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다음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기간 동안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를 지속한다. 재임중인 승인된 법정 감사인들은 룩셈부르크 법률에 따라 주주들에 의하여 교체될 수 있다.

제21조 주식의 환매

이하에서 더욱 상세하게 명시되는 바대로 회사는 오로지 법률상 제한에만 구속되어 언제나 그 소유 주식을 상환할 권한을 가진다.

주주는 이사회가 정한 조건 및 절차에 의거 투자설명서에 공시된 내용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회사 주식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법률상 제한 및 제22조에 따른 환매의무 중지를 전제로 하여 상환청구를 받는 즉시 동 주식을 상환한다. 회사에 의하여 상환되는 회사의 자본주식은 취소된다.

주주는 회사나 그 대리인이 적합한 양식으로 된 상환청구를 수령하는 날에 제22조에 따라 결정되는 해당 하위펀드의 주당 순자산가액을 근거로 하는 주가를 지급받는다. 단, 상환청구 수령일이 이사회가 정한 각 하위펀드에 대한 주식 상환을 위한 평가일(어떠한 경우에도 매월 2회 이상임)이거나, 또는 동 상환청구 수령일이 그러한 평가일이 아니거나, 또는 상환청구 수령일이 해당 하위펀드에 대한 평가일이지만 이사회가 정한 날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주식상환을 위하여 정한 평가일 익일에 결정되는 해당 클래스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근거로 하는 주가를 지급받거나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상환청구 수령일전에 가장 최종적인 순자산가치를 근거로 주가를 지급받는다. 순자산가치에서 회사주식의 판매대행회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및 상환청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i) 해당 하위펀드에 속한 자산의 해당 비율의 환매시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 및 경비의 예상금액과 (ii) 해외계좌신고제도(FATCA) 요건(이에 한정되지는 않음)에 따라 발생된 또는 이의 위반으로 인해 발행된 세금, 원천징수세 또는 기타 조세채무의 예상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지급은 관련 하위펀드와 관련 있는 자산에 대한 투자자산의 면에서 이사회가 선택하는 통화로

이루어지며 통상적으로 해당 평가일로부터 8영업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위 지급금을 동 기간 이내에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위 지급금은 이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자 없이 지급된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는 주주에 대하여 상환이 청구된 하위펀드와 관련하여 설정된 자산폴로부터의 투자자산을 상환금액이 계산되는 평가일 현재 상환대상 주식의 가치에 상당하는 가치(제22조에 언급된 방식으로 계산됨)의 정금으로 할당하여 지급할 권한이 있다 (US\$100,000 이하로 평가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양도되는 자산의 성격 및 종류는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며 해당 하위펀드의 기타 주주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사용된 평가방식은 감사의 특별보고서(관계 법규에 따라 요구되며 이사회에 의해 요청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 같은 양도에 소요되는 경비, 특히 특별보고서 비용은 환매하는 주주나 제3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판단으로 해당 매각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거나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비용은 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한다.

상환청구는 주주가 취소불능 서면 양식으로 룩셈부르크에 소재하는 회사의 본사나 주식상환과 관련하여 회사가 지명하는 사람이나 업체의 사무소에서 제출한다. 그러한 상환청구는 이표가 첨부된 적합한 양식으로 된 주권, 혹은 있는 경우, 만기도래전 배당이표가 첨부(무기명식 주식)된 주식, 회사에 대해 승계나 양도의 적합한 증명에 의한 주식(기명식 주식)을 포함한다.

어느 하위펀드 주식의 상환이나 전환(제24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음)으로 인하여 동 클래스주식의 주주의 지분이 정해진 주식수 이하로 감소되거나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순자산총액이 감소되는 경우, 동 주주는 소유하는 동 하위펀드 주식 전부의 상환이나 환매를 요청한 것으로 여겨진다.

어느 하위펀드 주식의 주주가 이사회가 수시로 정하여 투자설명서에 공시되는 최소보유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수 또는 총 순자산가치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본 정관 제7조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해당 하위펀드에서 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강제적으로 환매할 수 있다.

나아가, 환매 요청은 특정한 경우에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일정 범위 내에서 그 처리가 연기될 수 있다.

또한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거래에 대하여 회석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회석수수료는 순자산가액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환매 및 전환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소요될 수 있는 예상 비용, 경비 그리고 동 요청이 유가증권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되어 회사에 지급되는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21-1조 하위펀드 및 주식 클래스의 청산 및 합병

하위펀드 또는 주식 클래스의 총 주식 가치가 어떠한 사유에서든지 미화50,000,000달러(혹은 그 상당액) 이하로 떨어진 경우, 또는 해당 하위펀드나 주식 클래스와 관련된 경제적 혹은 정치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 또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해당 하위펀드나 주식클래스를 청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회사는 청산의 효력발생일 전에 청산 결정 사실을 공고하거나 주주들에게 통지하며, 이러한 공고 또는 통지는 청산의 사유 및 청산 절차를 명시한다.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주들간의 동등한 처우를 유지하고자 관련 하위펀드나 주식 클래스의 주주들은 자신의 보유 주식에 대한 환매나 전환을 계속하여 요청할 수 있다. 관련 하위펀드나 주식 클래스의 청산 종료시 주주들의 수익자들에게 분배되지 못한 자산은 주주의 수익자를 대신하여 *Caisse des Consignations*에 보관된다.

기타 모든 경우 또는 청산 결정에 대하여 주주들의 승인에 부쳐야 한다고 이사회가 정하는 경우, 하위펀드나 주식 클래스를 청산하는 결정은 청산 대상인 하위펀드 또는 주식 클래스의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해당 하위펀드 회의는 정족수를 요하지 아니하며, 청산에 대한 결정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회의의 결정은 적용 법규정에 따라 회사에서 통지 및/또는 공고한다.

하위펀드의 합병의 경우, 이사회에서 관련 하위펀드의 주주들의 총회에 합병에 대한 결정을 제기하기로 정하지 않는 이상 이사회는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주주총회는 정족수를 요하지 아니하며, 안전에 대한 결정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하나 이상의 하위펀드들의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 이러한 합병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동 주주총회는 정족수를 요하지 아니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가 채택된다. 이에 더하여, UCITS의 합병에 관한 조항은 2010년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하한 시행 규정들(특히 주주 통지와 관련하여)이 적용된다.

또한, 이사회는 본 항의 첫 번째 단락에 기재된 상황과 같은 경우에 2개 이상의 별도의 하위펀드로 구분함으로써 하위펀드를 재구성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룩셈부르크 법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결정은 본 항의 첫 번째 단락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방식으로 (경우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될 것이다. 덧붙여, 이러한 공고나 통지는 재구성의 결과로 발생하는 하위펀드와 관련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술한 단락은 주식 클래스의 주식의 구분에도 적용된다.

또한, 이사회는 본 항의 첫 번째 단락에 기재된 상황과 같은 경우에 (요구되는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하위펀드 내의 주식 클래스를 병합하거나 분할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룩셈부르크 법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결정은 본 항의 첫 번째 단락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방식으로 공고되거나 통지될 것이다. 덧붙여, 이러한 공고 및/또는 통지는 예정된 분할 또는 병합과 관련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또한 주식 클래스의 병합이나 분할 안전을 해당 주식 클래스의 보유자들의 총회에 제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총회는 정족수를 요하지 아니하며, 안전에 대한 결정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제22조 순자산가치

회사는 본 조항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은 해당 하위펀드의 주당 순자산가액에서 제21조에서 규정한 비용과 투자설명서에서 정한 이연판매보수를 공제한 금액으로 상환한다.

회사는 발행가 및 상환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조항에 따라 매 하위펀드에 대한 주당 순자산가액을 결정한다. 단, 매월 2회 이상, 이사회가 정하는 룩셈부르크 영업일(들)에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주당 순자산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날이나 시간을 “평가일”이라 함). 단, 어떠한 경우든 여하한 하위펀드의 평가에 대한 평가일이 동 하위펀드에 기인하는 회사의 투자자산의 상당 부분의 주거래 시장인 증권거래소의 휴장일이거나 동 하위펀드에 기인하는 회사 투자자산의 공정시가의 계산을 저해하는 그 밖의 휴장일 인 경우, 해당 하위펀드의 평가일은 휴장일이 아닌 익일 룩셈부르크 영업일이 된다.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언제라도 수시로 여하한 하위펀드 주식의 순자산가액의 결정 및 동 하위펀드 주식의 인수인에 대한 발행 및 주주로부터의 상환이나 어느 하위펀드의 전환이나 어느 하위펀드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중지할 수 있다.

- (가) 위 하위펀드에 기인하는 회사 투자자산의 상당부분이 호가되고 동 하위펀드 주식에 기인하는 회사의 투자자산의 상당부분에 대한 주요 시장 및 주요 증권거래소가 폐쇄되는 기간(보통 휴일이나 관례적인 주간 폐장이 아닌) 단, 동 증권거래소의 폐장으로 인하여 호가되는 회사의 투자자산의 평가가 영향을 받는 경우라야 한다. 또는 동 시장이나 증권거래소에서의 거래가 본질적으로 제한되거나 중지되는 기간, 단, 그러한 제한이나 중지로 인하여 호가되는 하위펀드에 기인하는 회사의 투자자산의 평가가 영향을 받는 경우라야 한다.
- (나) 회사의 판단으로 비상사태를 구성하는 국가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소유하고 위 하위펀드에 기인하는 회사 투자자산의 처분이 가능하지 않으며 주주의 권한이 침해당하는 기간
- (다) 어느 특정 하위펀드에 기인하는 회사의 투자자산이나 전술한 증권거래소의 현가의 가격이나 가치를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통신수단이 고장인 경우
- (라) 어느 하위펀드에 기인하는 회사의 투자자산의 가격이 어떠한 이유로든 즉시 또는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때
- (마) 회사투자자산의 환매나 지급에 관여하는 송금이 이사회는 정상적인 환율로 이행될 수 없는 기간
- (바) 회사의 자회사를 통하여 보유중인 투자자산의 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을 때
- (사) 이사회는 견해로 주주들이 회사나 하위펀드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러한 주식 거래 실패로 회사나 하위펀드의 주주들이 만약 다른 경우였다면 주주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을 조세채무를 지게 되거나 기타 금전적 불이익 또는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동 기간 동안
- (아) 회사 또는 하위펀드가 해산되거나 해산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결정을 이사회에서 내리거나 주주들(회사나 하위펀드의 해산에 대한 결의가 제안된 주주총회의 주주들)에게 통지가 송부된 날 또는 익일로부터
- (자) 합병의 경우로서 이사회가 주주보호를 위해 정당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 (차) 하위펀드가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하나 이상의 피투자펀드의 순자산가치 산정이

중지된 경우

회사는 적용 법규정에 따라 적합하거나 요구되는 경우 위와 같은 중지를 공표한다. 회사는 상환 또는 전환을 청구하는 주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라 취소불능 상환 또는 전환 요청서를 제출하는 때 중지를 통지한다.

어느 하위펀드에 대한 중지는 다른 하위펀드 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 발행, 매입 및 전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회사 주식의 순자산가치는 각 하위펀드 주식의 주당 숫자로 명시되며, 이하에 명시되는 평가규정(이하 “평가규정”)에 따라 또는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적정하고 공정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평가일의 업무 마감시에 동 하위펀드에 기인하는 부채를 공제한 자산가치인 평가일 현재 매 하위펀드에 기인하는 회사의 순자산을 미상환 해당 하위펀드 주식수로 나누어 결정된다. 모든 평가 규정 및 결정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해석된다.

악의, 태만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이사회나 순자산가치 계산을 위하여 이사회가 선임하는 은행, 회사나 기타 조직체(“이사회 대리인”)에 의하여 의한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내려지는 결정은 회사 및 현재, 과거 또는 미래 주주를 궁극적으로 구속한다.

평가규정

각기 다른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가. 회사의 자산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a) 발생이자를 포함한 모든 소지현금 및 예치 현금
- b) 어음, 일람불 어음 및 미수령채권(매각되었으나 교부되지 않은 증권대금 포함)
- c) 모든 사채, 정기불 어음, 주식, 사채, 인수권, 신주인수권증서, 옵션 및 기타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이나 주식, 그리고 기타 투자자산 및 회사가 소유하거나 계약한 증권, 단 회사는 배당락, 권리락이나 기타 관례에 의하여 야기되는 증권의 시가 변동에 대하여 이하 나(i)항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다
- d) 모든 주식 및 미수주식배당금
- e) 회사가 소유하는 이자부 증권의 발생이자, 단, 동 증권의 원본에 포함되거나 반영된 이자는 제외
- f) 장부상 가격 인하되지 않는 한 주식 발행 및 배당 비용을 포함한 회사의 예비 조직구성 비용
- g) 선납비용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기타 자산.

나. 자산 가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i) 소지현금, 예치 현금, 어음 및 일람불 어음 및 미수령 채권, 선납비용, 현금배당금 및 선언되거나 발생되었으나 미수령 이자의 가치는 지급되지 않거나 수령되지 않을 우려가 없는 한 그 전체 금액으로 한다. 동 금액이 지급되지 않거나 수령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경우에 회사가 적합하다고 여기는 할인을 한 후 가치로 평가한다.
- (ii) 양도성 증권, 단기금융상품 및 금융파생상품의 가액은 해당 증권 또는 자산이 거래되거나 거래가 승인된 증권거래소 또는 정규시장의 입수 가능한 최종 가격으로 결정된다. 그러한 증권이나 기타 자산이 하나 이상의 증권거래소 또는 기타 정규시장에서 호가되거나 거래되는 경우 이사회는 증권이나 자산의 가격 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증권거래소 또는 기타 정규시장의 우선순위에 대한 방침을 정한다.
- (iii) 양도성 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이 어떠한 공식적 증권거래소 또는 정규시장에서도 거래되거나 거래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또는 공식적 증권거래소나 정규시장에서 거래되거나 거래가 승인된 경우더라도 입수 가능한 최종 가격이 그의 공정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자산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매각 가격에 근거하여 평가하며, 그러한 가격은 신중하고 성실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 (iv) 공식적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기타 정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파생상품은 시장 관행에 따라 평가된다.
- (v) 하위펀드(들)을 포함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이나 주식은 동 집합투자기구가 보고한 입수 가능한 최종 순자산가치를 기초로 평가된다.
- (vi) 유동성 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은 명목가에 발생이자를 더한 값 또는 상각후 취득원가 평가방법(an amortised cost basis)에 기초하여 평가됩니다. 기타 모든 자산은 관행상 허용되는 경우 해당 방식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
- (vii) 전술한 평가 원칙들 중 어느 일부가 특정 시장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평가방법을 반영하지 않거나 그러한 평가 원칙이 회사 자산의 가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정확해 보이지 않을 경우,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평가 원칙 및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다른 평가 원칙을 채택할 수 있다.

전술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일에 회사는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1) 자산 매입, 동 자산에 대하여 지급될 대가의 가치는 회사의 부채로 표시하며 취득될 자산의 가치는 회사의 자산으로 표시한다.
- 2) 자산 매도, 동 자산을 대하여 수령할 대가의 가치는 회사의 자산으로 표시하고 인도되는 자산은 회사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단, 평가일에 위와 같은 대가나 자산의 정확한 가치나 성격이 평가일에 알려지지 않는 경우 그 가치는 회사에 의하여 평가된다.

다. 회사의 부채는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a) 모든 차입금, 어음 및 미지급 부채
- b) 회사 차입금에 대한 발생이자 (동 차입금의 약정수수료 포함)
- c) 모든 발생 또는 미지급 비용 (관리비용, 고문료, 성과수수료, 보관수수료 및 대리인 수수료 등 포함하는 관리수수료)
- d) 평가일이 선언일에 해당하거나 선언일 다음인 경우 회사가 선언하는 미지급배당금액 및 배당이 선언되었으나 이표가 제시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한 만기도래한 자산금액의 지급 의무를 포함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알려진 부채
- e) 회사가 수시로 결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일까지의 자본 및 수익을 근거로 하는 세금 및 이사회가 승인하는 기타 적절한 준비금 (있는 경우)의 적립
- f) 회사 자본주식에 의하여 표창하는 부채를 제외한 여하한 종류 및 성격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회사의 기타 부채

위와 같은 부채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회사는 설립비용 및 투자자문회사, 자산운용회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성과보수, 회계사, 자산보관회사, 주소지대리인, 등록 및 명의개서대리인, 지급대리인, 등록지에서의 대리인, 이사, 감독임원과 임원, 기타 회사가 고용하는 대리인 수수료를 포함), 법률 및 회계비용, 보험료, 판매촉진비, 인쇄비, 보고 및 공고비용(광고비, 투자설명서, 사업설명서, 유가증권신고서, 공지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전자식 또는 채래식 매매계약서 포함) 작성 및 인쇄비용, 정관의 작성 및 제출비용을 포함), 조세나 부과금, 증권거래소나 기타 시장에서의 주식호가비용, 그리고 기타 운영비용(자산매입 및 매도경비, 이자, 은행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우편비, 전화비 및 텔렉스비를 포함)으로 구성되는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회사는 매년 또는 기타 기간 동안 정기적인 또는 순환성격의 관리 및 기타 경비의 예상 수치를 계산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동일한 비율로 발생시킬 수 있다.

라. 순자산가치 표시 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모든 투자자산, 현금잔고 및 기타 자산은 순자산가치 결정일 및 시간 현재 시장이율이나 환율을 고려하여 그 가치를 평가한다.

마. 일정한 하위펀드에 기인하는 순자산은 특정 하위펀드에 기인하는 전술한 회사의 자산에서 순자산가치가 결정되는 평가일 업무종료시 전술한 회사의 부채를 차감한 자산을 의미한다. 하위펀드의 자산은 동 하위펀드와 관련된 투자자들의 권리와 동 하위펀드의 설정, 운영 또는 청산과 관련하여 청구권을 지닌 채권자들의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된다.

바. 이사들은 수 개의 하위펀드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방식에 따라 하나의 자산풀을 설정할 수 있다:

- a) 어느 한 하위펀드 또는 여러 하위펀드들의 주식발행대금은 회사 장부상 당해 하위펀드(들)에 대하여 설정된 자산풀로 계상되며, 이에 속하는 자산, 부채, 수익, 지출은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풀로 계상된다.
- b) 어느 풀 안에 회사가 특정 하위펀드에 대하여 특정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가액은

- 해당 하위펀드로 할당되며, 그에 대한 매매대금은 취득시점에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동 하위펀드에 속했을 해당 풀의 여타 순자산액 배분액으로부터 공제된다.
- c) 어느 자산이 다른 자산으로부터 파생된 경우 파생자산은 회사 장부상 그 자산이 파생해 나온 풀과 동일한 풀 또는 경우에 따라 동일한 하위펀드로 계상되고 자산 재평가시 가치의 증가나 감소는 해당 풀 및/또는 하위펀드 계상된다.
 - d) 회사가 특정 풀이나 하위펀드에 속하는 자산과 관련하여 또는 특정 풀이나 하위펀드에 속하는 자산과 관련하여 취해진 행위와 관련하여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 동 부채는 해당 풀 및/또는 하위펀드로 할당된다.
 - e) 회사의 어느 자산이나 부채가 특정 풀 또는 하위펀드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 동 자산이나 부채는 모든 풀 간에 동등하게 할당되거나 또는 해당 금액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순자산가치에 비례하여 풀들 또는 하위펀드간에 할당된다.
 - f) 여하한 하위펀드에 대하여 선언된 배당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자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에 동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는 당해 배당금액만큼 감소한다.
 - g) 특정 풀이나 특정 하위펀드로 할당되는 비용 지급시 동 비용은 해당 풀의 자산으로부터 또는 경우에 따라 해당 하위펀드에 속하는 순자산액 배분액으로부터 공제된다.

본 항에서 문맥상 적합한 경우에 따라 “하위펀드”는 “주식 클래스”를 의미한다.

사. 주당 순자산가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매 하위펀드에 속하는 순자산가치는 평가일 현재 기발행 하위펀드 주식수로 나눈다.

순자산가치는 거래비용(거래 스프레드를 포함함), 금융수수료 및 주주의 거래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반영하여 이사회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아.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 a) 제21조 조항에 따라 상환되는 주식은 제21조에 따라 평가일의 업무종료 직후까지 미상환된 것으로 처리되며, 그 시각부터 지급시까지 그 가격은 회사의 부채로 처리한다.
- b) 제7조에 따라 회사가 송부하는 매입통지서에 명시된 주식은 제7조에서 명시된 평가일 업무종료시 직후까지 미상환된 것으로 처리되며 그 시각부터 제7조에 따라 은행에 예치될 때까지 그 가격은 제7조 규정에 따라 부채로 처리된다.
- c) 회사가 청약 매출하는 주식은 인수 및 장부기재시에 기발행주식으로 처리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청약이 적용되는 평가일 업무종료 직후까지이다. 그러므로, 미수령 자금은 회사의 자산으로 처리된다.

제22-1조 공동운용(Pooling)

1. 이사회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제22조 제(바)항에 명시된 바와 같은 여하한 하위펀드에 대하여

설정된 자산풀(“참여펀드”)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하위펀드 또는 다른 룩셈부르크 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 설정한 자산풀의 전부나 일부와 함께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운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확장된 자산풀(“자산풀”)은 먼저 각 참여 펀드의 현금이나 (이하에 명시된 제한에 따라) 기타 자산을 당해 자산풀로 전입함으로써 형성된다. 이후 이사들은 자산풀로 현금이나 기타 자산을 추가로 전입시킬지 여부를 수시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이사들은 해당 참여펀드가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 자산풀의 자산을 개개의 참여펀드로 전입시킬 수 있다. 현금 이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풀의 투자부문에 적합한 경우에만 자산풀로 할당될 수 있다.

2. 자산풀의 자산에 대한 각 참여펀드의 권한은 동 참여펀드가 행한 자산의 출자 및 인출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3. 자산풀의 자산과 관련하여 수령한 배당금, 이자 및 기타 이익 배당금은 자산풀의 자산에 대한 각 참여펀드의 출자액에 비례하여 해당 일시에 혹은 이익 수령시에 즉시 참여펀드의 계정으로 예치된다.

제23조 주식의 발행

회사 주식이 청약 모집될 때마다, 주당 발행가격은 최초 발행일이나 투자설명서에 공시된 최초 모집 기간에는 최초발행가격이 되며, 그 이후부터는 인수인으로 부터 적합한 양식의 주식청약신청을 수령하는 날 현재 해당 하위펀드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만일, 수령일이 이사회가 정한 평가일이거나, 수령일이 평가일이 아니거나, 신청서를 평가일에 수령하였으나 이사회가 정한 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주식발행을 위하여 정한 평가일 익일에 결정되는 해당 하위펀드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이사회가 명시하는 바에 따라서는 청약신청서 수령시 이전에 결정되는 해당 하위펀드 주식의 최근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동 순자산가치는 이사회가 수시로 승인하는 바에 따라 순자산가치의 8%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수익을 투자할 때 회사가 부담하는 예상 경비 및 비용의 비율 및 해당 판매수수료만큼 증액될 수 있다.

하위펀드 또는 주식 클래스의 최초 모집 기간 이후 이사회는 단독 재량으로 해당 하위펀드나 주식 클래스의 추가 청약을 마감하도록 정할 수 있다.

또한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거래에 대하여 회석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회석수수료는 순자산가치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환매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소요될 수 있는 예상 비용, 경비 그리고 동 요청이 유가증권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매입가격을 회사의 투자방침 및 투자제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증권으로 회사에 지불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물매입은 회사의 승인받은 법정 감사인에 의해 발행된 특별보고서(이사회에 의해 특별히 요청될 수 있음)에 대한 이사회 승인과 모든 적용 법률 및 규정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현물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 특히 특별보고서 비용은 통상적으로 매입인이나 제3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이사회는 판단으로 현물 출자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거나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비용은 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한다.

제24조 주식의 전환

주주는 해당 클래스 주식의 평가일 익일의 순자산가치로 어느 한 하위펀드의 클래스 주식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다른 주식 클래스 또는 다른 하위펀드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사회는 무엇보다도 특히 적격요건, 전환 횟수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둘 수 있으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요금지불을 전제로 하여 전환을 실행할 수 있다.

제25조 회계연도 및 재무제표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30일에 종료한다. 회사의 회계는 미화로 표시한다. 제5조 규정에 따라 서로 다른 하위펀드 있는 경우 각 하위펀드에 대한 회계가 복수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그 회계는 미화로 환산되어 회사 회계목적상 합산된다.

제26조 배당금

주주총회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 수익 처분을 결정하며 수시로 배당을 선언하거나 이사회에 배당 선언을 수권한다.

특정 자산풀과 관련이 있는 하위펀드 주식에 대한 배당금 분배에 대한 결의는 이상에서 명시하는 바대로 동일 풀과 관련이 있는 하위펀드 주식 주주들의 과반수 찬성 결의에 의한다.

중간배당은 법률에서 명시하는 추가 조건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여하한 하위펀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다.

주주총회나 적법하게 수권된 이사회는 주주에게 배당 대신에 회사의 납입 주식을 귀속시킬 수 있으며 또는 그에 대하여 단편적인 권한을 인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배당금이 미화50달러나 이에 상당하는 기타 통화 금액보다 적은 경우 동 주식을 주주에게 귀속시킬 권한을 가진다. 선언된 배당금은 미화나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전환 가능한 통화나 회사 주식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정하는 장소 및 시간에 지급될 수 있다.

제27조 투자운용

회사는 피델리티 그룹사(“피델리티사”)와 자산운용계약을 체결하며 동 계약에 의거 피델리티사는 회사의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이를 운용한다.

어떠한 형식으로도 자산운용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피델리티사의 요청에 따라 제1조에 명시된 명칭이 아닌 명칭으로 상호를 즉시 변경하여야 하며 특히 변경된 명칭은

“피델리티”나 기타 유사한 단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자산운용계약은 그 개정이나 해지를 규율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본 제27조는 회사 미상환 주식의 3분의 2이상의 주주가 참석하거나 대표된 해당 목적으로 위한 주주총회에서 동 회의에 참석하거나 대표된 주식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다.

각 개별적인 자산몰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에 지급되는 운용수수료는 해당 자산몰의 순자산가치의 평균에 대하여 적용되는 회사의 판매문서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본 정관에 명시된 제한 내에서 회사는 등록 주주들에 대한 3개월 전 사전통지으로써 운용수수료를 증액할 수 있다.

회사는 2010년 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은행이나 예금기관(“자산보관회사”)과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한다. 자산보관회사는 회사 및 그 주주들에 대하여 2010년 법상 규정된 책임을 진다. 회사의 모든 증권 및 기타 자산은 자산보관회사에 의하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지시에 따라 보유된다. 자산보관회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자산보관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자산보관회사가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 이사회는 2개월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을 자산보관회사로 선임하며 그에 의하여 이사회는 동 기관을 사임하는 자산보관회사를 대신할 새로운 자산보관회사로 선임한다. 이사는 자산보관회사 선임을 해지할 권한이 있으나 본 규정에 따라 후임 자산보관회사가 선임되지 않는 한 자산보관회사를 해임할 수 없다.

회사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현금이 자산운용회사, 기타 회사가 선임하는 판매회사 또는 그들의 관련인에게 예치되는 경우 예치금에 대한 우대금리 이상의 비율로 이자가 발생한다.

자산보관회사나 자산운용회사나 관계인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정족수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제한은 소유주로부터 의결지시를 수령하는 피지명인으로서 보유하는 주식이나 정족수 부족으로 휴회한 회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또는 판매대행회사의 “관계인”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 (가) 해당 회사 보통자본주식의 20% 이상에 대하여 직접, 간접으로 실질적인 자본주식을 소유하거나 직접, 간접으로 그 회사 총 의결권의 20% 이상을 행사하는 자,
- (나) 위 (가)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지배하는 자,
- (다)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나 판매대행회사가 모두 합하여 직접, 간접으로 자본주식의 20%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회사,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나 또는 판매대행회사가 모두 합하여 직접, 간접으로 총 의결권의 20% 이상을 행사하는 회사,
- (라)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나 관계인의 이사나 임원 또는 위 (가)(나)(다)항에 정의하는 회사의

이사나 임원.

제27-1조

회사는 2010년 법 제15장에 의거 인가받은 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와 관리서비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계약에 따라 회사는 관리회사에 투자운용, 일반사무관리 및 마케팅 서비스 제공을 위탁한다.

제28조 해산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 해산을 야기시키고 권한 및 보수를 결정하는 주주총회에서 지명되는 하나 이상의 청산인(사람이나 법적 사업체)에 의하여 이행된다. 각 하위펀드에 속하는 청산대금은 청산인(들)에 의해 해당 하위펀드의 주주들에게 그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다.

제29조 개정

본 정관은 룩셈부르크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족수와 의결 요건 및 제27조 개정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기타 다른 하위펀드에 상응하는 어느 하위펀드 주식의 주주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은 그러한 해당 하위펀드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전술한 정족수 및 과반수 요건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제30조 준거법

본 정관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사항은 상사회사에 관한 1915년 8월 10일 법률과 그 개정본 그리고 2010년 법에 따라 규정된다.